

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·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증개정조례(안)

| | |
|----|-----|
| 의안 | |
| 번호 | 192 |

제출년월일 : 1996. 11. .
제 출 자 : 이 종 를 의원
외 3인

□ 제 안 이 유

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회의수당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
을 정하기 위해 이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·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
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 요 골 자

-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기중 현지 확인하는 경우
참석한 의원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)

이천시 조례 제 호

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
조례증개정조례안

이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·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1항중 “ 다만,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”를 “ 다만,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기중 현지 확인하는 경우 참석한 의원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”로 한다.

제3조 제2항중 “ 당해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”를 “ 회의록상 출석한 의원과 현지 확인시 참석한 의원에 대하여 당해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”로 한다.

부 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3조(회의수당) ①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(위원회 회의를 포함 한다)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출 석일수 1일당 50,000원의 회의수 당을 지급한다.</p> <p>다만,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 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 규정에 의한 회의수당은 당해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 다.</p> | <p>제3조(회의수당) ①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다만,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에 의하여 회기중 현지 확인하는 경우 참석한 의원과 관공서의 공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이 회기중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----- 회의록상 출석한 의원과 현지 확 인시 참석한 의원에 대하여 당해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.</p> |
| | |